

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21 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11. 27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12. 7(목) 제13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예결특위

2. 제안이유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(정례회)의 심의·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3개 기금 33억 8,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,200만원이 감액되었음.
- 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예산액	전년도예산액	증감(△)
합 계	3,386,937	3,438,637	△51,700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05,470	95,154	10,316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322,137	2,311,421	10,716
평창군재난관리기금	959,330	1,032,062	△72,732

4. 검토내용 및 의견

가. 2007년도 기금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도	2006년도	증 감(△)
합 계	3,386,937	3,438,637	△51,700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05,470	95,154	10,316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322,137	2,311,421	10,716
평창군재난관리기금	959,330	1,032,062	△72,732

- 2007년도 평창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3개 기금에 33억 8,6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,170만원이 감액되었고,
- 기금 중
 - 식품진흥기금은 10.8% 증액된 1억 540만원
 - 사회복지기금은 0.4% 증액한 23억 2,200만원임
 - 반면, 재난관리기금은 7.0%가 감액된 9억 5,900만원으로 나타남

나.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				지 출		
	계	전입금	예치금 회 수	이자 수입	기 타	계	고유목적 사업비	이월액
계	3,386	560	2,718	94	14	3,386	750	2,636
식품진흥기금	105		88	2	14	105	7	97
사회복지기금	2,322		2,241	80		2,322	79	2,243
재난관리기금	959	560	388	11		959	663	295

다. 기금별 운용계획

1)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예치금회수	적립금이자	기타수입
105	88	2	14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고유목적사업비	예치금
105	7	97

○ 수입은 예치금회수(前기 전년도 이월액),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,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었음

○ 지출은

-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,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 등 일반 운영비에 780만원을 지출하고
- 잔액은 다음년도 예치금으로 이월할 계획임.

2)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예치금회수	전입금	적립금이자
2,322	2,241		80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고유목적사업비	다음연도이월액
2,322	79	2,243

- 본 기금은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, 여성발전기금, 장애인 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, 여성의 복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운용예정임.
- 재원은 예치금회수(전년도 이월액)와 이자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며,
-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,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, 노인복지 사업, 여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노인복지, 여성발전, 장애인 복지,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의 기금 재원으로 지출됨.

3) 재난관리기금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전입금	예치금회수	이자수입
959	560	338	11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고유목적사업비	다음연도이월액
959	663	295

-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
-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, 예치금회수(전년도 이월액)와 이자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며,
- 지출은 응급복구장비 임차,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, 침수흔적도 작성 및 다음년도 이월금인 예치금재원으로 지출됨.

라. 검토의견

-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
 - 계획의 내용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단체 세입·세출예산과 같이 세입·세출을 장, 관, 항, 세항, 목으로 구분 작성되어 있음
- 다만 본 기금의 설치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금의 관리 운용이 필요하며
-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, 적립금이자, 예치금회수금(전년도 이월액)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와 범위를 정하고 있어
-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됨.